

제4절 재정운용 - I

1. 경 리

가. 의 의

재무행정의 주요분야인 경리를 간략히 정의한다면, 경리란 금전·물품·재산 등의 출납, 보관, 관리 등을 일련의 조직하에 기술적으로 종합하여 연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로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례, 규칙 등의 회계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공공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 용역을 조달·관리·사용하는데 따르는 모든 경제활동에 관한 경리절차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지며 그 중 지출 관리 계약 및 현금보관, 물품관리, 회계관리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경리관리는 그 집행에 있어 적법성과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업무로서 대상 공무원은 전문성과 더불어 투철한 공직관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경리업무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나. 2009년도 추진실적

1) 각종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 사전 공개

- 대상사업 : 공사, 용역,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 공개실적 : 253건(공사 129건, 용역 75건, 물품 49건)
- 공개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2) 조달시스템(G2B)과 연계한 전자입찰 운영

- 대상사업 : 공사·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5백만원 이상
- 운영실적 : 503건(공사 255건, 용역 132건, 물품 116건)

3) 공사이행 주민참여감독제 이행

- 대상사업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주민숙원사업
- 운영실적 : 7건 7명

4)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결 산 입 액	세 결 산 출 액	영 여 금 현 황					
			계	명 이 시 월	사 이 고 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사용 내역	순 세 계 영 여 금
합 계	465,502,414,856	365,408,643,490	100,093,771,366	22,084,861,460	7,576,353,830	3,280,000,000	4,290,857,050	62,861,699,026
일반회계	414,292,823,592	341,826,294,820	72,466,528,772	20,337,514,350	6,895,361,600	3,280,000,000	4,149,822,110	37,803,830,712
특 별 회 계	계	51,209,591,264	23,582,348,670	27,627,242,594	1,747,347,110	680,992,230	141,034,940	25,057,868,314
	의료급여 기금	616,181,791	567,050,390	49,131,401				49,131,401
	폐기물 시설	5,648,075,111		5,648,075,111				5,648,075,111
	지하수 관리	25,594,150		25,594,150				25,594,150
	주차장	12,754,349,897	6,347,699,520	6,406,650,377	275,316,110	100,659,540	139,761,550	5,890,913,177
	장수지구	4,700,105,938	2,716,575,520	1,983,530,418				1,983,530,418
	서창지구	17,606,805,150	11,103,346,640	6,503,458,510	800,000,000			5,703,458,510
	도림지구	7,197,382,065	1,283,362,410	5,914,019,655	145,143,000	235,550,000		5,533,326,655
	기반시설	2,661,097,162	1,564,314,190	1,096,782,972	526,888,000	344,782,690	1,273,390	223,838,892

다. 2010년도 추진계획

- 1) 공사, 용역, 물품구매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 대상사업에 대한 발주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
- 2) 공사·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5백만원 이상 전자계약 추진
- 3) 공사 50억원, 용역·물품 10억원 이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자문·심의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4)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이행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2. 복식부기 회계

가. 의 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을 일반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며, 정부부문도 민간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로써 주요 선진국의 재정개혁시 채택되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무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 가치 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하여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도입되었다.

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 1) 경쟁과 책임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성과지향 정부 운영
- 2) 재무정보 공개, 평가 및 주민 참여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3) 저성장과 재정압박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영

다.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1)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

자 산			부 채		
과 목	금 액	구성비	과 목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70,621	10.5	유동부채	5,226	38.14
투자자산	2,892	0.18	장기차입부채	1,700	12.40
일반유형자산	180,451	11.11	기타비유동부채	6,773	49.46
주민편의시설	331,474	20.42	소계	8,473	61.86
사회기반시설	935,734	57.63	부채 총계(B)	13,699	100
기타비유동자산	2,421	0.16	순자산(C=A-B)		
소계	1,452,972	89.5	고정순자산	147,675	9.17
자산 총계(A)	1,623,593	100	특정순자산	14,873	0.92
			일반순자산	1,447,346	89.91
			순자산 총계	1,609,894	100

2) 재정운영

(단위 : 백만원, %)

수 익				비 용		
과 목	금 액	구성비		과 목	금 액	구성비
자 채 조 달 수 익	지방세수익	50,912	15.48	인건비	65,099	21.04
	경상세외수익	24,983	7.59	운영비	98,616	31.88
	임시적세외수익	23,861	7.25	정부간이전비용	2,627	0.85
	소계	99,756	30.33	기타이전비용	130,385	42.14
정 부 간 이 전 수 익	지방교부세수익	7,943	2.41	기타비용	12,643	4.09
	조정교부금수익	53,628	16.30	비용 총계(B)	309,370	100
	국고보조금수익	100,543	30.57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등 ◆기타이전비용 : 민간보조금·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기타비용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시도비보조금수익	66,532	20.23			
	기타정부간이전수익	530	0.16			
	소계	229,176	69.67			
수익 총계(A)		328,932	100	운영차액(C=A-B)	19,561	

3. 재산관리

가. 물품관리

1) 목 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다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재물현황

(단위 : 개/천원)

구 분	총 계	구 분 청	의 회	동사무소	보 건 소	출 장 소
수 량	198	118	3	50	19	3
금 액	2,482,004	1,952,543	54,278	305,767	125,502	43,914

3) 2009년도 추진실적

- 행정복사기 임차 추진 : 46개소 54대
- 불용물품 처리
 - 관용차량 매각 : 겔로퍼II외 5대 83,314천원
 - 일반 불용물품 매각 : 농용로더 1대 7,770천원

4) 2010년도 추진계획

- 물품의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도입
 -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 극대화
 - 신속한 물품의 실태파악 및 불용물품 처분

나. 차량관리

행정수요의 증가와 현장 확인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규격·용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최우선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운행 체계와 사용연한의 연장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차량보유현황

(단위 : 대)

차종 기관	계	승용	승합	화물	특 수 차						비고
					청소차	사리차	산림차	앰블런스	냉동차	급수차	
계	97	25	13	38	12	1	2	2	1	3	
본청	69	20	13	16	12	1	2	1	1	3	
보건소	5	2		2				1			
출장소	3	1		2							
의회	2	2									
동	18			18							

다. 청사관리

1) 구청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넓은 주차공간과 편리한 종합민원실 운영 등으로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 구청사 일반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 건물규모
 - 본 동 : 지하1층, 지상7층
 - 민 원 실 : 지상2층
 - 의회청사 : 지하1층, 지상3층
- 대지면적 : 28,385㎡ (8,586평)
- 연 면 적 : 25,203㎡ (7,624평)

나) 보건소 일반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대지면적 : 4,290㎡ (1,297평)
- 연 면 적 : 2,595㎡ (784평)

2) 동 주민센터

(단위 : ㎡)

구 분 동 별	소 재 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구조	건축일	비고
구 월 1 동	구월동 1214-5	992.0	985.1	철근콘크리트	'94.12.05	
구 월 2 동	구월동 23-1	1,013.0	1,738.9	"	'06.05.04	
구 월 3 동	구월동 1098-7	919.2	1,321.9	"	'92.12.17	
구 월 4 동	구월동 1296-6	1,043.1	1,404.5	"	'94.12.24	
간 석 1 동	간석동 353-4	998.3	1,525.3	"	'93.06.10	
간 석 2 동	간석동 206-6	582.3	632.1	"	'85.12.31	
간 석 3 동	간석동 49-1	1,003.0	754.31	"	'84.11.15	
간 석 4 동	간석동 575-17	679.4	999.9	"	'92.01.16	
만 수 1 동	만수동 983-5	1,160.0	2,067.0	"	'08.01.08	
만 수 2 동	만수동 869-14	1,265.0	850.1	"	'92.01.16	
만 수 3 동	만수동 847-1	1,596.7	2,379.8	"	'05.05.30	
만 수 4 동	만수동 21	1,206.2	1,285.4	"	'95.06.17	
만 수 5 동	만수동 876	1,157.0	1,395.2	"	'93.03.19	
만 수 6 동	만수동 1020	887.5	1,110.2	"	'94.12.12	
장 수 서 창 동	서창동 558-2	1,082.5	1,586.7	"	'05.11.21	
남 촌 도 립 동	남촌동 354-1	826.0	1,151.9	"	'92.12.21	
논 현 동	논현동 603-5	1,233.0	1,999.9	"	'09.07.17	
논 현 고 잔 동	논현동 633-3	1,403.0	1,554.9	"	'07.09.12	

3) 청사 신축 추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 초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청사의 신축 추진을 통해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현대적 기능의 청사환경 조성 및 주민 자치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009년 추진실적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위 치	면 적		사 업 비			규 모
		대 지	연면적	계	토 지	건 축	
논 현 동 주 민 센 터	논현동 603-5	1,233.0 (373평)	1,999.9 (605평)	4,959	1,273	3,686	지하1 지상3

○ 2010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 치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추 진 사 항
		계	토 지	건 축		
간석3동 청사	간석동 49-1	5,902	기존부지	5,902	'09년~ '11년	'09.9월 : 신축계획수립 '10.2월 : 설계용역시행
논현고잔2동청사	고잔동 10번지일원	4,835	무상귀속	4,835	'09년~ '11년	'09.9월 : 신축계획수립 '10.3월 : 설계용역시행
남동구보건소 증축	만수동 1008	10,865	기존부지	10,865	'09년~ '11년	'09.12월 : 교평용역시행 '10.1월 : 설계용역시행

4. 국 · 공유지관리

가. 국 · 공유 일반재산의 의의

- 1)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이는 국가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재산이다.
- 2)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재산이다. 즉,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 토지 · 건물등의 부동산과 그 중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중물
 -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 신탁의 수익증권,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3)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나. 국유일반재산 관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위임된 국유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코자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누락된 재산의 발굴,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9년도 재산증감내역은 토지매각 및 신규등록토지 발생 등으로 2009년말 현재 290필지 225,124㎡로 전체적으로 2008년 대비 면적이 12,144㎡ 감소하였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대부료 67건 367,740천원, 매각대금 6필지 446,695천원, 변상금 22건 180,273천원을 부과하여 총 20,477천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다.

1) 2009년도 국유재산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필 지	면 적	비 고
계	290	225,124	
일 반 토 지	290	225,124	

2) 2009년도 국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계		대 부			변상금 부과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금 액	필지	면 적	금 액
국 유 재 산	89	73,811	67	45,268	367,740	22	28,543	180,273

다. 공유일반재산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적 수입원으로 일반재산은 구유지 93필지 7,746㎡, 시유지 158필지 50,674㎡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대부료 28건 76,948천원, 매각대금 7필지 1,249,839천원, 변상금 11건 20,160천원을 징수하여 총 1,346,947천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현황

(단위 : 필지, ㎡)

구 분	재 산 별	잡 종 재 산	
		구 유 지	시 유 지
필 지		93	158
면 적		7,746	50,674

2) 2009년도 공유재산(시·구유지) 대부 및 변상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계		대 부			변상금 부과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금 액	필 지	면 적	금 액
공유 재산	39	6,757	28	5,442	76,948	11	1,315	20,160

라. 유희재산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 국·공유재산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색출, 유희지 및 은닉재산 발굴
-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 등 조치
-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 추진 검토 및 대체재산 조성

5. 공공시설 관리

가. 의 의

주민들의 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해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의 설계단계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요구 및 기능과 미가 어우러진 현대적 시설물의 건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나. 2009년 추진실적

구 분	위 치	연면적(㎡)	규 모	공사기간	주요마감재
논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논현동 603-5	1,999㎡	지하1층 지상3층	'08.11~'09.07	제주석현무암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구월4동 1266	2,394㎡	지상1층	'09.01~'09.10	막구조
구월4동 무료 급식소 신축공사	구월동 1296-14	299㎡	지상2층	'09.05~'09.08	그라스울판넬
소래포구 화장실 신축공사	논현동 111-462	75㎡	지상1층	'09.05~'09.09	알루미늄 복합판넬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만수동 934-3	777㎡	지하1층 지상3층	'09.10~'10.02	알루미늄 복합판넬

다. 2010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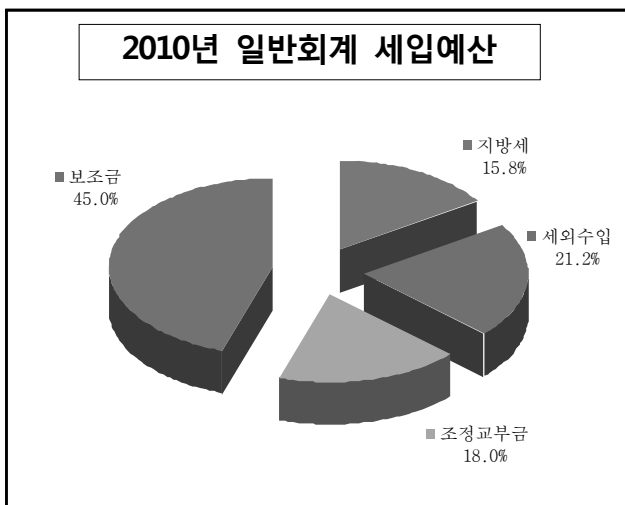
구 분	위 치	규 모(연면적)	공사기간(예정)
보건소 이전청사 신축공사	만수동 1008	지하1 지상4 (5,280㎡ 내외)	2010.06~2011.11
간석3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간석동 49-1,26	지하1 지상5 (2,950㎡ 내외)	2010.06~2011.05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공사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공3 블록	지하1 지상3 (2,310㎡ 내외)	2010.06~2011.05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논현2택지개발지구 북1	지하1 지상4 (3,400㎡ 내외)	2010.07~2011.06
소래도서관 신축공사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도1 블록	지하1 지상3 (2,000㎡ 내외)	2010.08~2011.05
서창도서관 신축공사	서창동 558-1 서창근린공원내	지하1 지상3 (2,000㎡ 내외)	2010.08~2011.05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구월동 1264-9	3층4단 (57대)	2009.12~2011.04

※ 규모 및 공사기간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제4절 재정운용 - II

1. 2010년도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수규모

가. 2010년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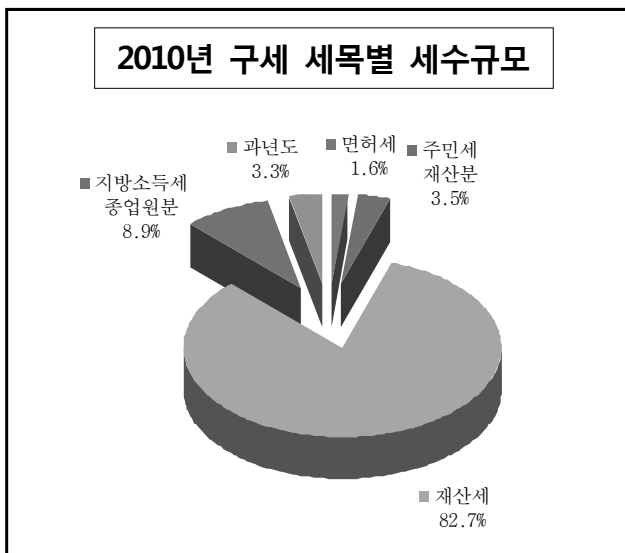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총 계 : 331,462

구 분	목표액
지 방 세	52,245
세외수입	70,265
조정교부금	59,855
보 조 금	149,097

※ 2010년도 본예산 기준

나. 2010년 남동구 지방세(구세) 세목별 세수규모



[단위 : 백만원]

□ 총 계 : 52,245

세 목	목표액
면허세	825
주민세재산분	1,819
재산세	43,22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4,651
과년도수입	1,730

※ 2010년도 본예산 기준

2.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국가로부터 수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행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위생, 교통, 청소, 교육, 문화, 예술진흥 등 일반적인 사업에, 목적세는 도시계획, 소방시설, 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사용된다.

나.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법의 일부개정(2010. 1. 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 및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었다.

【 종전의 지방세 세목체계 】

- 구세(세무1과)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 목적세 : 사업소세
- 시세(세무2과)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현행 지방세 세목체계 】

- 구세(세무1과) ⇒ 보통세 : 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재산세
- 시세(세무2과)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지방소비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다. 지방세(구세) 주요 세목별 성질

1) 면허세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검사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의 지방세로 지방세법상 별표에 열거된 대상을 과세객체로 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과징하고 있다.

2) 주민세(재산분) ← 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

010년부터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편으로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구에 사업소(연면적 330㎡ 초과)를 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종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부터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편으로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함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종업원을 5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하며, 각각의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3. 2009년도 지방세정 운영

가. 지방세정 운영방향

2009년도 지방세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건실한 운영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 전 직원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정리 및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공평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열린 지방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수

정신고 납부제도 등에 대한 착실한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였다.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였고 세무조사활동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자료관리의 전산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참여와 세정업무에 대한 직원상호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나. 지방세 부과징수

200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67,584백만원을 부과하여 350,83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구세 및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1) 200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2010.2.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비 율	
					(C/A)	(C/B)
합 계	계	368,367	367,584	350,834	95.2	95.4
	시 세	318,937	313,240	301,167	94.4	96.1
	구 세	49,430	54,344	49,667	100.5	91.4
현	계	366,458	363,553	351,370	95.9	96.6
	시	소 계	318,233	312,792	95.1	96.8
		취 득 세	79,563	78,036	96.7	98.6
		등 록 세	74,969	77,927	103.9	99.9
		주 민 세	68,870	63,269	88.6	96.4
		자 동 차세	25,098	28,295	97.7	86.7
	세	도시계획세	33,478	27,070	78.3	96.8
		공동시설세	7,460	8,039	102.3	95.0
		지역개발세	6	7	106.5	93.6
		지방교육세	28,789	30,149	99.4	94.9
	구	소 계	48,225	50,761	100.8	95.8
		면 허 세	820	934	108.1	94.9
		재 산 세	41,041	43,207	100.9	96.3
		종합토지세	0	2	-	99.8
		사 업 소세	6,364	6,618	103.0	99.0
과 년 도	계	1,909	4,031	-536	-28.1	-13.3
	시 세	704	448	-1,600	-227.2	-356.5
	구 세	1,205	3,583	1,064	88.3	29.7

2)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목 표 액	233,721	245,962	300,625	373,284	368,367
부 과 액	278,045	327,788	397,452	374,344	367,584
징 수 액	224,535	284,740	383,165	360,558	350,834

다. 지방세징 운영

1)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운영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인 e-tax 서비스 및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다.

2)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개선

인터넷사용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민원 처리로 신뢰세징을 실천하였다.

3)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신뢰받는 지방세징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세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였다.

4)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실천함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과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점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납세홍보물 유인 배부, 반상회보 게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세 납기전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을 존중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5)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전직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등록, 급여·보험금 및 예금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과년도 구세 체납액 3,583백만원중 29.7%인 1,064백만원을 징수,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6)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납세자, 탈세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루세원을 근절하였으며, 정책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
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4. 2010년 지방세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목표액(A)	2010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계	368,367	418,447	50,080	113.6	
	시 세	318,937	366,202	47,265	114.8	
	구 세	49,430	52,245	2,815	105.7	
현 년 도	계	366,458	416,001	49,543	113.5	
	시 세	소 계	318,233	365,486	47,253	114.8
		취 득 세	79,563	102,924	23,361	129.4
		등 록 세	74,969	90,628	15,569	120.9
		주 민 세 (균 등 분)	-	1,932	-	-
		지방소득세(소득분)	-	72,596	-	-
		자 동 차 세	25,098	25,390	292	101.2
		도 시 계 획 세	33,478	32,127	△1,351	96.0
		공 동 시 설 세	7,460	8,521	1,014	114.2
		지 역 개 발 세	6	6	0	100.0
	구 세	지 방 교 육 세	28,789	31,632	2,843	110.0
		소 계	48,225	50,515	2,290	104.7
		면 허 세	820	825	5	100.6
		주 민 세 (재 산 분)	-	1,819	1,819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0	4,651	4,651	-
		재 산 세	41,041	43,220	2,179	105.3
과 년 도	계	1,909	2,446	537	128.1	
	시 세	704	716	12	101.7	
	구 세	1,205	1,730	525	143.6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세목 체계

-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여 도입
 - ▶ 주 민 세(소 득 할) → 지방소득세(소득분)
 - ▶ 사업소세(종업원할)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종전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
 - ▶ 주 민 세(균 등 할) → 주민세(균등분)
 - ▶ 사업소세(재 산 할) → 주민세(재산분)

5.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의 의의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나.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 진다.

- 첫 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둘 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 셋 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 넷 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 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 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작다는 점이다.

다.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 200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

【2010.2.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계		107,803	130,941	101,043	478	29,420	77.5
경 상 적 수 입	소 계	25,452	26,187	26,106		81	99.7
	재산임대수입	393	357	350		7	98.0
	사 용 료 수 입	1,622	1,597	1,523		74	95.4
	수 수 료 수 입	8,640	8,355	8,355		0	100.0
	사 업 수 입	2,505	2,055	2,055		0	100.0
	징 수 교 부 금	9,322	10,897	10,897		0	100.0
	이 차 수 입	2,970	2,926	2,926		0	100.0
임 시 적 수 입	소 계	82,351	104,754	74,937	478	29,339	72.0
	재산매각수입	15,883	6,393	6,393		0	100.0
	순세계잉여금	52,917	35,544	35,544		0	100.0
	이 월 금	5,072	25,658	25,658		0	100.0
	전 입 금	0	7	7		0	100.0
	부 담 금	5,613	3,863	3,443		420	89.1
	잡 수 입	2,056	8,137	2,753	1	5,383	33.8
	과 년 도 수 입	810	25,152	1,139	477	23,536	6.4

라. 세외수입 증대 추진 방안

- 1) 수수료·사용료 요율의 현실화 추진
- 2) 세외수입 채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3) 세외수입 업무연찬 및 업무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4)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마. 2010년 세외수입 징수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목표액(A)	2010년 목표액(B)	증 감 (B-A)	비 율 (B/A)
계		74,051	70,266	△3,735	94.9
소 계		27,497	26,786	△711	97.4
경 상 적 수 입	재산임대수입	393	419	26	106.6
	사 용 료 수 입	1,500	2,363	863	157.5
	수 수 료 수 입	8,967	8,635	△333	96.3
	사 업 수 입	2,934	2,986	52	101.8
	징 수 교 부 금	11,595	10,076	△1,519	86.9
	이 자 수 입	2,107	2,307	200	109.5
소 계		46,554	43,479	△3,075	93.4
임 시 적 수 입	재산매각수입	24,426	8,917	△15,509	36.5
	순세계잉여금	16,000	28,000	12,000	175.0
	이 월 금	3,000	3,000	0	100.0
	전 입 금	0	42	42	-
	부 담 금	701	801	100	114.3
	잡 수 입	1,824	1,897	73	104.0
	과 년 도 수 입	603	822	219	136.3

※ 목표액은 연도별 당초 목표액임

제4절 재정운용 - Ⅲ

1.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지방세는 국가로부터 수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행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위생, 교통, 청소, 교육, 문화, 예술진흥 등 일반적인 사업에, 목적세는 도시계획, 소방시설, 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사용된다.

나.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시세(12개 세목), 구세(4개 세목)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시세 (세무2과)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구세 (세무1과) ⇒ 보통세 :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다. 지방세(시세) 주요 세목별 성질

1) 취 득 세

재산권의 유통과정에서 재산권의 취득시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자 및 건물의 증·개축,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2) 등 록 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과세되며,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3) 주 민 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가)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 및 농업소득세액의 10%이며

나)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개인·법인·사업장할) 주민세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기여도가 가장 잘 부각된 세목이다.

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크게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소득분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종업원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세금으로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징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이며, 납세의무는 소득분은 군·구내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종업원분은 사업장의 종업원을 5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분은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종업원분은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포함된 세금으로 매년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가)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로 부과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부과

나)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비영업용 승용차량구입(등록기준일)후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체감하여 차령 12년 이상 경과시 50%(한도)까지 경감

다) 소유권 이전 등록시 신청하던 일할계산 신청이 폐지되고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부과

2. 2009년도 지방세정 운영

가. 지방세정 운영방향

2009년도 지방세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건실한 운영 및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 도약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를 통한 전 직원 총체적인 부과·징수노력으로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공평세정 구현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하였고 세무조사활동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자료관리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열린 지방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적 부심사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 등에 대한 착실한 이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하는 한편, 경제적인 여건이 침체됨에 따라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세무사를 초청하여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참여와 세정업무에 대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나. 지방세 부과징수

200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67,583백만원을 부과하여 350,83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구세 및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2010.2.27 현재】

(단위 : 천원, %)

구 분		년간목표액 (추경)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미 수 액	징수비율 (%) (부과대비)	
합 계	계	368,367,250	367,583,929	350,834,511	2,029,008	14,720,410	95.4	
	시 세	318,937,000	313,240,464	301,167,151	947,091	11,126,222	96.1	
	구 세	49,430,250	54,343,466	49,667,360	1,081,918	3,594,188	91.4	
현 년 도	계	366,458,250	363,552,696	351,370,181	455,387	11,727,128	96.6	
	시 세	소계	318,233,000	312,791,989	302,766,606	264,645	9,760,738	96.8
		취 득 세	79,563,000	78,035,485	76,921,293	176	1,114,016	98.6
		등 록 세	74,969,000	77,926,686	77,873,222	0	53,463	99.9
		주 민 세	68,870,000	63,269,430	60,986,218	2,874	2,280,338	96.4
		자 동 차 세	25,098,000	28,294,744	24,530,775	6	3,763,964	86.7
		도시계획세	33,478,000	27,070,168	26,210,075	105,238	754,856	96.8
		공동시설세	7,460,000	8,039,495	7,633,662	118,292	287,541	95.0
		지역개발세	6,000	6,826	6,391	0	435	93.6
		지방교육세	28,789,000	30,149,155	28,604,971	38,060	1,506,125	94.9
	구 세	소계	48,225,250	50,760,707	48,603,575	190,742	1,966,390	95.8
		면 허 세	820,000	933,500	886,229	238	47,033	94.9
		재 산 세	41,041,250	43,206,805	41,159,846	190,504	1,856,455	95.3
		종합토지세	0	2,065	2,062	0	3	99.8
		사 업 소 세	6,364,000	6,618,337	6,555,439	0	62,898	99.0
과 년 도	계	1,909,000	4,031,233	-535,670	1,573,621	2,993,282	-13.3	
	시 세	704,000	448,475	-1,599,455	682,446	1,365,484	-356.6	
	구 세	1,205,000	3,582,758	1,063,785	891,176	1,627,798	29.7	

2)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목 표 액	233,721	245,962	300,625	373,284	368,367
부 과 액	278,045	327,788	397,452	374,344	367,584
징 수 액	224,535	284,740	383,165	360,558	350,834

다. 지방세징 운영

1)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운영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납부 및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인 e-tax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상계좌 시스템 및 신용카드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을 추진하였다.

2)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개선

인터넷사용 보편화에 따른 지방세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버민원 상담 창구를 개선 운영과 방문민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민원처리로 신뢰세정을 실천하였다.

3) 세무행정서비스 현장의 적극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였다.

4)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실천함은 물론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사업과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점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납세홍보물 유인 배부, 반상회보 게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세

납기전 모바일 SMS 문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구민을 존중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세무행정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5) 친시장 지방세 지원 강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라 지방세 관련 개인 및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과세품질관리 T/F팀 운영 및 과세품질인증제 시행, 국세·지방세 합동 조세 설명회 개최,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조세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의 사전해소 및 불이익 사전예방과 다각적인 세제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현년도 지방세 확충 노력

현년도 지방세를 징수 확충노력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징수율 제고하고 현년도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송달불능분에 대한 부과철회, 사실상 멸실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 제고를 추진하였다.

7)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 강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성실 신고납세자, 탈세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루세원을 근절하였으며, 정책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제도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3. 2009년 지방세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목표액(B)	2010년 목표액(A)	증 감 (B-A)	비 율 (B/A)	
계	계	368,367	418,446	-50,079	88.03	
	시 세	318,937	366,202	-47,265	87.03	
	구 세	49,430	52,960	-3,530	93.33	
현 년 도	계		366,458	416,000	972	88.09
	시 세	소 계	318,233	365,486	-47,253	87.07
		취 득 세	79,563	102,924	-23,361	77.30
		등 록 세	74,969	90,628	-15,659	82.72
		주 민 세	68,870	3,751	65,119	1,836.0
		자 동 차 세	25,098	25,390	-292	98.84
		농업소득세	0	0	0	0
		도시계획세	33,478	32,127	1,351	104.2
		공동시설세	7,460	8,251	-791	90.41
		지역개발세	6	6	0	100
		지방교육세	28,789	31,632	-2,843	91.01
	구 세	소 계	48,225	50,515	-2,290	95.46
		면 허 세	820	825	-5	99.39
		재 산 세	41,041	43,220	-2,179	94.95
		종합토지세	0	0	0	0
		사 업 소 세	6,364	0	6,364	0
과 년 도	계		1,909	2,446	-537	78.04
	시 세	704	716	-12	98.32	
	구 세	1,205	1,730	-525	69.65	